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6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 백승아·박해철·김준혁

김문수 · 문정복 · 박성준

송옥주 • 진선미 • 김영호

정을호 · 고민정 · 김성환

서영교 • 이기헌 • 정진욱

문금주 • 노종면 • 강준현

송재봉 • 유종군 의원

(20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. 이로 인해 교원들 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,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 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.

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,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

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20 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 ·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4(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교육부장관 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정기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
- ② 교원의 교육활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.
- 1.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
- 2.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
- 3.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
- 4. 제24조에 따른 수업과 그 준비
- 5.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관리
- 6.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
- 7.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부모와의 상담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한 연구활동
- 9. 그 밖에 법령에서 교원의 업무로 정한 사항
-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・시행하기 위하여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한다.
-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기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0조의4(교원의 교육활동 지원
	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교
	육부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에
	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
	활동에 대한 지원계획(이하
	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정기적
	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 <u>.</u>
	② 교원의 교육활동은 다음 각
	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.
	1.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생 학
	업성취도 평가
	2.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
	<u>지도</u>
	3.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
	<u>정 운영</u>
	4. 제24조에 따른 수업과 그 준
	<u>비</u>
	5.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
	<u>관리</u>
	6.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
	7.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
	관련된 학부모와의 상담
	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한

연구활동

- 9. 그 밖에 법령에서 교원의 업무로 정한 사항
-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 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과 제3항에 따른 실 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 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교육감에게 통 보하고 이를 공개한다.
-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 기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